

損害保險料率의 自律化와 그 對應策

李 海 寬
(現代海上(株)·專務理事)

◀ 目 次 ▶

- I. 序論
- II. 損害保險과 Underwriting
- III. 損害保險과 料率體系
- IV. 保險料率의 自律化
- V. 結論

I. 序 論

1980年代에 國內保險產業에서 일어났던 現象들을 보면 초반에는 國內保險市場의 對外開放이 그리고 후반에는 再保險의 自律化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결과 國內保險市場이 외국에 完全開放되었고, 再保險市場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專業再保險者의 위치가 政府規制에서 벗어나면서 原保險者와 再保險者間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保險市場開放과 관련하여 損保業界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保險經營의 자율촉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험상품인가절차간소화지침(1989.3.31)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申告後販賣”(File and Use), “販賣後申告”(Use and File) 그리고 “申告不要制

度”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보험정책당국이 종래에 硬直的으로 운영하던 保險商品認可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認可擬制 범위를 확대하면서 損害保險業者에게 保險商品의 운영에 상당한 伸縮性을 부여하였다.

보험정책당국은 또한 손해보험요율조정지침(1989.6.29)을 제정하여 종전의 수시 및 자의적 요율조정에서 과거 일정기간의 損害率實積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일정한 공식에 따라 保險料率을 정기적으로 조정토록하여 保險料率의 適正性和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保險契約者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保險產業의 건전한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海上保險 料率算定指針(1989.10.5)은 輸出積荷保險과 500톤 미만의 船舶保險에 대해서는 매2년마다 保險開發院의 통계를 기초로하여 요율재조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극히 제한적이지만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요율조정의 자율폭을 직접 경험케 하여 향후 전개될 輸出積荷保險의 價格競爭에 대비케 하였다. 500톤미만의 선박도 해외에서의 요율구득을 피하고 保險業者들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조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상기 언급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은 최근 금

용산업이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영업환경의 自律化와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國內損害保險産業도 이러한 自律化 내지는 國際化趨勢에 부응하여 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시장기능의 확대를 國內損害保險産業에 도입하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야에서 自律化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분야는 保險商品의 價格이라고 보어진다.

II. 損害保險과 Underwriting

Underwriting은 危險의 認識과 評價, 被保險者의 選擇, 保險價格決定과 保險 條件의 결정등의 업무를 이행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하며 “危險選擇”이라고도 한다. 保險會社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危險選擇의 결과가 이익을 실현시켜야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損害保險의 Underwriting은 保險의 일부분야가 아니라 그 자체가 保險의 全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損害保險은 해당 危險에 따른 保險種目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保險種目에 대한 Underwriting은 해당 Underwriter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그 주요기능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危險의 選擇

Underwriting의 첫 단계는 사실에 입각하여 危險을 確認 評價하여 保險者가 인수하고자 하는 우량 被保險者를 보험가입 청약자들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첫째 이유는 危險의 逆選擇(adverse selection)을 回避하기 위한 것이다. 危險

의 逆選擇이란 손해의 확률이 평균 내지는 평균이하보다 평균이상의 保險請約者들의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保險契約者에게 부과된 保險料가 손해의 潛在性에 비해 불충분할때 逆選擇이 나타난다. 保險者는 Underwriting시에 결과가 逆選擇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危險은 “選擇되거나 또는 逆選擇된다”는 Underwriting 규칙은 바로 危險의 逆選擇에서 연유된 것이다.

Underwriting시 두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保險者의 引受能力(capacity)이다. 引受能力은 保險者가 保險契約者剩餘金(policyholders' surplus)의 크기에 의거 保險契約를 취급할 수 있는 保險契約의 引受限度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剩餘金에 대한 保險料의 인수비율은 3:1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損害保險社의 年間保有保險料 總額은 保險契約者剩餘金の 500%를 초과할 수 없다.

2. 保險價格決定

危險引受 決定後에 Underwriter는 적절한 危險分類(risk classification)와 料率(rate)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保險種目は 복잡한 분류와 다양한 料率體系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危險分類와 料率は 법적으로건에 부합되고 나아가서 부적절한 保險料로 인한 영업손실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분류와 料率體系가 주의깊게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분류와 料率의 決定은 Underwriting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

保險者의 입장에서 볼때 保險擔保(insurance coverage)는 하나의 商品이나 다름없다. 保險者의 目的은 保險契約者에게 適切한 擔保(proper cover-

age)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保險擔保는 정당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Underwriter는 保險購買者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保險商品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被保險者들은 표준담보(동질적인 보험)를 구매하는데 반하여 일부 被保險者들은 Underwriter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독특한 危險(異質의인 危險)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危險에 상응한 保險料賦課 즉 保險의 價格決定은 Underwriter에게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다. 또한 保險價格은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3. 保險條件의 決定

危險選擇 및 價格決定과 함께 세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적용될 保險條件(policy terms and conditions), 즉 保險證券을 결정하는 것이다. 保險證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保險者는 보험청약자에게 이용가능한 保險의 종류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해당 保險證券에 적절한 保險料를 부과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保險契約에는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保險契約이 성사될때까지 保險條件에 관련된 협상이 상당기간 요구된다. 保險契約者가 요구하는 保險擔保條件, 一般條件, 免責條件, 그리고 控除額 등이 협상의 대상이다.

個人保險種目(personal lines)보다 企業保險種目(commercial lines)인 경우에는 상기 열거한 사항들의 협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企業保險種目중에서도 巨大損害(catastrophe losses)가 잠

재되어 있는 巨大危險(capacity risk)은 再保險市場이 제시하는 危險條件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를 추가로 설득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4. 保有와 再保險

保險契約의 인수가 결정되면 保險者는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손해가 발생하여 保險者가 재무적 곤경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保險者가 안전하게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再保險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된다.

損害保險에서 再保險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企業保險인 경우에는 再保險의 지원 없이는 Underwriting을 할 수가 없다. 危險이 이질적이고 巨大損害(catastrophe losses)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 再保險의 확보없이 保險契約의 인수는 불가능하다.

상기 4가지의 Underwriting의 기능들은 Underwriter가 취급하는 모든 危險에 적용된다. Underwriting의 기본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수익성있는 危險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기 기능중 어느하나가 누락될 경우 保險會社는 保險을 수익성있게 운영할 수가 없게 된다.

保險會社는 保險을 인수하는 것이 거절하는 사업이 아니다. Underwriter의 직능은 각 危險을 인수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서 保險會社의 전반적 이익을 가져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危險의 성격에 따른 인수여부 즉 危險의 보험가능여부 그리고 Underwriting방침에 적합한지를 결정함으로써 달성된다.

危險이 인수 가능하다면 Underwriter는 이들 危險에 保險價格과 保險條件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인수한다. 또한 Underwriter는 거대손해액이 잠재되어있는 危險保有를 제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危險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損害保險의 Underwriting은 복잡하고 난해하여 오랜 경험과 保險引受技法이 요구된다.

損害保險의 危險들은 生命保險과 달리 同質的인 危險과 異質的인 危險들로 구성되어 있고 同質的인 危險이라해도 危險의 성격상 상당한 기간후에 claim이 발생하면서 claim 처리가 오랜시간을 요하는 危險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각 危險에 해당되는 保險條件과 保險價格의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III. 損害保險과 料率體系

1. 保險價格決定의 一般原則

保險商品의 價格決定은 Underwriting 의사결정의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保險者가 料率(rates)과 保險料(premium)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기법 또는 연구방법은 Underwriter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料率은 充分性(adequacy), 公平性(equity) 그리고 非過度性(nonexcessiveness)의 법적으로 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經濟的 購入可能性(affordability), 單純性(simplicity), 損害統制의 獎勵(encouragement of loss control), 對應性(responsiveness) 그리고 安定性(stability) 등도 料率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料率算出技法의 핵심은 確率과 人數의 法則이며 이 법칙에 의하면 危險은 동질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고발생도 확률적이어야 한다. 料率算定

의 중심부분은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분류다. 만약 이들 수집분류된 자료가 부정화하면 料率은 과도하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않게 된다.

자료수집에서 특별히 고려할 문제는 그 수집의 기준이다. 적절한 기간에 걸쳐 保險料와 損害額을 비교적 상당기간동안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保險料와 손해액 지급간의 시차로 야기되는 문제는 calendar-year, policy-year 및 calendar-accident year로 해결되고 있다.

保險料率은 크게 3개의 부류로 집단화되어 있다. 級別料率(class rates)은 동질적인 危險을 料率算定目的으로 집단화한 것이다. 個別料率(individual rates)은 危險이 같지 않을때 사용되며, 判斷料率(judgement rates)은 자료가 입수할 수 없을때 사용된다.

料率開發에는 純保險料方式, 損害率方式 그리고 判斷方式등 3가지 방식이 있다. 따라서 Underwriter는 상이한 방식에 의거 料率을 算定할때 각 방식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保險은 불완전경쟁산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保險價格은 일반상품과 같이 需要供給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cost-push pricing”의 개념에 의거 결정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 개념에 의거한 保險料(premium)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있다.

$$\text{保險料} = \text{危險保險料(risk premium)} + \text{事業費(expenses)} + \text{非常危險準備金(contingency reserve)} + \text{利益(profit)}$$

상기 구성요소들중에 가장 중요한 危險保險料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발생건수에 평균손해액을 곱하

여 얻어지는데 純現價(net present value)에 의거 계산된다. 保險者는 保險料를 미리 수령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얻게되며 이 投資受益은 保險料의 할인에 사용된다.

保險料의 受領과 保險金支給間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등귀(inflation)로 미리 받은 保險料가 불충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保險料의 핵심부분인 危險保險料의 算定에는 정확한 豫測의 필요성은 물론 inflation의 참작이 요구된다. 保險料는 또한 危險保險料에 추가해서 事業經費, 非常危險準備金 그리고 利益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料率制度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料率制度에서는 保險業法 제7조에 의거 保險事業의 영위에 필요한 保險約款,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算出方法書는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득하여 사용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保險業法 제22조(認可擬制)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保險種目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自由料率制度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요율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1) 損害保險會社의 經營效率化 지침(1988.2.23)
중 V-保險商品 및 保險料率에 관한 사항
(1985.4.1. 개정)
- 2) 保險料率의 算定 및 檢證基準에 관한 規定
(1985. 3. 11)
- 3) 損害保險商品認可 一般基準(1988.12.7개정)
- 4) 長期損害保險商品 開發基準(1988.3.31)

5) 海上保險 商品開發基準(1988.4.30)

6) 損害保險 料率調整指針(1989.6.29)

7) 海上保險 料率算定指針(1989.10.5)

상기규정외에 保險料 및 책임준비금 산출지침이 각 保險種目別로 기준시달되어 保險事業者는 이들 規定 및 指針들에 의해 해당 保險商品에 대한 保險料率을 算定 내지는 求得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損害保險料率制度는 underwriting의 견지에서 볼 때 인가요율, 자유요율과 再保險者求得料率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인가요율은 협정요율, 범위요율과 개별인가요율로 구별되고 있으며 保險種目別 요율적용 형태는 다음 表와 같다.

IV. 保險料率의 自律化

損害保險商品의 價格이 市場機能의 원리 즉, 需要供給에 의거한 價格決定이 가능한가. 사실, 保險商品은 擔保範圍(coverage), 危險度(exposure)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保險商品에 적용되는 保險料率의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保險商品의 가격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서도 保險需要者들은 保險供給者들의 同 保險 擔保에 대한 가격의 차이를 인지하고 보다 낮은 가격으로 保險商品을 제공하는 保險者에게로 이끌러가는 현상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保險料率規制의 주요 목적은 요율이 과도, 불충분,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부차적 목적으로 保險者의 支拂能力(solventy)을 유지시키고 모든 종류의 保險의 利用可能性(availability)과 經濟的 購

主要 保險業種別 料率 形態

(表)

보 험 종 목	요 율 형 태
○ 화재보험	○ 국문약관 : 협정요율 ○ 영문약관 : 범위요율(0.2%~1%) 및 재보험자 구득요율
○ 해상보험	○ 수입화물적하 및 운송보험 : 협정요율 ○ 수출화물 적하 및 500톤 미만 선박보험 : 자유요율 ○ 500톤 이상 선박 및 항공보험 : 재보험자 구득요율
○ 자동차보험	○ 전보험 종목 : 협정요율
○ 특종보험 · 기계, 건설, 조립보험 ·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 상해보험 · 동물, 유리보험	○ 보험가입금액의 크기 또는 위험의 성질에 따라 협정요율, 범위요율 내에서 재보험자 구득요율, 인가요율 사용 ○ 협정요율 ○ 협정요율 및 재보험자 구득요율 ○ 협정요율 ○ 사유요율
○ 장기손해보험	○ 신고후 판매요율(재무부 지침범위내에서 보험사업자 자유요율) ○ 사전인가요율

* 자료 : 2000年代의 保險産業展望(保險監督院, 1990. 4. 1)

入可能性(affordability)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의 자율화는 두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자율화로써 保險者가 料率賦課(rating)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체 요율을 개발하여 경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전 승인을 전제로한 규제범위내에서 요율을 경쟁하는 範圍料率(flex-band)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범위요율도 신고후판매제도(file & use)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자율화요율이 아니다.

保險者가 요율을 자율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율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여야 하며 요율부과절차를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 1) 保險契約引受規則(policy-writing rules)
- 2) 個別料率策定方法(schedule or experience rating plans)
- 3) 控除額割引(deductible credits)

4) 保險金額增額 限度要因(increased limit factors)

5) 料率策定規則(rating rules)

6) 料率관련 保險引受規則(rate-related underwriting rules)

보험료율의 자율화는 Underwriting입장에서 볼 때 상기 정보이외에 손해상황에 관한 신빙성있는 통계자료가 충분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요율산정의 기법이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더우기 요율산정은 該當 保險種目分野에 정통한 오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Underwriter의 지원과 자체의 보험수리사를 확보하여야 된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料率制度가 오래동안 정부의 규제로 운영되고 있어 요율사용화의 전제조건인 料率算定(rate-making)技法 내지는 자체의 料率策定方法(rating plans)이 전무한 상태다.

더우기 요율운영측면에서 볼때 個人保險(personal lines)과 企業保險(commercial lines)은 危險의 성격상 요율적용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個人保險은 危險이 비교적 同質的(homogeneous)이어서 통상 manual rate를 사용하고 있으며 企業保險은 危險의 분류도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하면서 危險이 異質的(heterogeneous)이다. 따라서 企業保險은 보상이 다양하여 요율부과가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企業保險은 요율부과요인등이 복잡하여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다.

個人保險(personal lines)은 또한 家計 내지 個人들에 의해서 이용되는데 특히, 自動車保險의 경우 사회보장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요율의 규제는 엄격하고 공공가격의 성격이 농후해 오히려 요율의 자율화가 個人保險 수요자에게 保險者의 保險引受忌避 또는 요율의 부당한 인상 등 불이익을 끼칠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California州와 New Jersey州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企業保險중에서 巨大危險인 경우에는 再保險의 지원 없이는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再保險의 料率과 保險條件에 따르는 경향이 짙어 요율의 자율화를 기할 수가 없다. 현재 손보업계는 特定保險種目에 대한 요율구득협정에 의거 해외에서 요율을 구득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硬性市場(hard market)일때 요율의 인상을 감수하는 문제가 있어 요율의 자율화가 반드시 保險需要者에게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

保險價格競爭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험을 소개하면 하나는 미국 의회의 요청에 의거 조사한 G.A. O.의 “保險者의 破産調査報告書”(Insurer Failures <1987.7>)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損保社의

파산의 첫째 원인은 지나친 保險價格引下 경쟁이며 그리고 自動車保險이 主導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 하나는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겪은 賠償責任保險의 위기다. 이때 미국이 賠償責任保險 需要者들은 保險料의 엄청난 인상으로 保險의 利用可能性(availability)과 經濟的 購入可能性(affordability)문제가 대두되어 保險料率의 자율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를 인식시켜 준 바 있다.

미국도 1960년대초에 保險價格에 대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料率策定方法(rating plan)을 통한 요율경쟁을 유도하였지만 손보사의 파산증가 현상과 1980년 중반에 경험한 保險危機를 회피하기 위하여 保險料率의 운영을 保險價格 경쟁의 분위기에서 事前承認(prior approval)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은 政策當局은 물론 損保業界가 크게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V. 結 論

保險價格의 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더우기 오랜 경험과 충분한 통계자료의 집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요율의 自律化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國際化와 自律化 趨勢에 맞추어 우리 損保業界도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國際環境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保險料率의 자율화는 Underwriting側面에서 볼때 個人保險보다 企業保險, 그 중에서도 巨大危險(capacity risk)에서나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再保險市場의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율화의 효과인 가격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

다른 보장은 없다.

또한 範圍料率을 통한 要素의 自律化도 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價格競爭은 시장점유율(market share)증대 차원에서 最低料率로 지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競爭價格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損害保險에 있어서의 要素의 自律化는 그 의도는 긍정적일 면은 있으나 要素체계의 복잡성과 要素산정과정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